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5월 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5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5년 5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영의)

□ 제안이유

○ 유사시에 민·관·군·경·예비군과 민방위대 등 전 국가방위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 및 집중하고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합방위지침이 개정(대통령훈령 제28호, 2004. 7.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협의회 심의사항 중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및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을 구체화하여 명시함.(안 제2조)

○ 협의회의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

○ 협의회의 간사를 편성보강 및 조정하고, 구체화하여 명시함.(안 제4조)

○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 운영 및 방위지원본부 구성과 방위지원본부 운영시기를 추가함.(안 제6조)

○ 동 지원본부를 총괄지원반, 통신지원반 등 2개반으로 신설·운영함.(안 제7조)

○ 방위지원본부 지원에 대한 예산확보 등 그 운영과 임무에 대한 개별규정을 구체화함.(안 제8조)

○ 취약지역 선정 심의시 군 부대장의 요청에 의거 작전취약지역 심의 및 관리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9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상부 지침 변경에 따른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지요?	○ 네, 그렇습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79호
의결 년월일	2005.5.19 (제119회)

제출년월일 : 2005. 5. 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유사시에 민·관·군·경·예비군과 민방위대 등 전 국가방위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 및 집중하고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합방위지침이 개정(대통령훈령 제28호, 2004. 7.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협의회 심의사항 중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및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을 구체화하여 명시함.(안 제2조)

나. 협의회의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

다. 협의회의 간사를 편성보강 및 조정하고, 구체화하여 명시

함.(안 제4조)

라.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 운영 및 방위지원본부 구성과 방위지원본부 운영시기를 추가함.(안 제6조)

마. 동 지원본부를 총괄지원반, 통신지원반 등 2개반으로 신설·운영 함.(안 제7조)

바. 방위지원본부 지원에 대한 예산확보 등 그 운영과 임무에 대한 개별규정을 구체화함.(안 제8조)

사. 취약지역 선정 심의시 군 부대장의 요청에 의거 작전취약지역 심의 및 관리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9조)

□ **첨부** :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천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①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취약지역 선정 및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유사시 군 작전 활동에 미칠 수 있는 도로나 교량의 건설, 저수지나 호수의 조성 등 도시개발계획 등으로 인한 작전환경 변화와 관련된 계획

7. 전술헬기장 관리예산

8.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2. 향토예비군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3.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지역내 예비군 훈련 관련 편의시설 및 교육재료, 장비지원에 관한사항

3. 통합방위 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 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제3조(협의회 구성) ①협의회 의장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부천시의회의장

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3. 부천교육장

4. 부천남부경찰서장

5. 부천중부경찰서장

6. 103보병여단 48대대장

7. 국군기무사령부 601부대 부천지역 담당관

8. 국가정보원 부천지역 담당관

9. 부천소방서장

10. KT 부천지사장

11.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 : 103보병여단 48대대 작전장교

2. 예비군담당간사 : 103보병여단 48대대 동원장교

3.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

4.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5. 경찰담당간사 :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제5조(실무위원회)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부천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 부시장

2. 실무위원회의 위원 : 분야별 담당간사와 위원장이 지정한 자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과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이 조례에서 규정한 실무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6조(지원본부) ①시장 소속하에 부천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계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③지원본부의 운영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2. 진돗개 “하나” 발령 시

3. 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 등 전국 훈련 시

4. 기타 협의회 의결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단위 군부대 훈련 시

④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은 종합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로 구성하며,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반원은 과장급 인원과 각 지원반 대표 1명으로 운영하고,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은 군부대의 참모 또는 과장급 경찰관으로 하며, 반원은 군・경의 정보・작전・통신 분야의 3인 이상 5인 이하의 인원으로 운영한다.

⑥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 산업・수송・장비,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정부기능반(충무 3종시)으로 구성

한다.

⑦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부천시청 내에 둔다.

⑧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동 지원본부) ①각 동 소속하에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동 지원본부는 제6조제2항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동 지원본부는 피해복구와 통신지원을 담당하는 총괄지원반과 의료·보급 및 수송을 담당하는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동의 조직이나 기능변화로 시에서 직접 지원할 경우에는 동에 지원본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동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장은 동주무가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⑤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동 지원본부는 동사무소 내에 둔다.

⑥동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방위지원본부의 임무와 행정절차) ①지원본부는 피해복구, 보급, 의료시설, 유류보관 및 판매시설 등 기능별 작전지원소요 집행 능력을 보유한 관, 민 기관 또는 단체, 회사를 지정하여 평상시에 관리

하여야 한다.

②지원본부는 국가중요시설, 심정·발전기 등과 같은 비상시 군사작전 지원 및 생활필수시설과 주민안전 위해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안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지원본부는 통합방위훈련을 위한 군·경 정보 및 작전 합동상황실 요원의 통신, 숙식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지원본부는 향방 동원된 예비군과 타 지역에서 전환되어 작전에 참가하는 향토예비군에 대한 전투근무지원과 행정적 지원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지원본부는 지역 내 취약지역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유지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현황을 유지·보완하여야 한다.

⑥지원본부는 통합방위를 위한 자체훈련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향방훈련에 있어서 군·관·경·예비군 등 지역 내 전 국가방위요소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취약지역 선정심의 및 대비책) ①협의회는 법 제17조제1항의 취약지역 선정기준에 따른 지역 내 작전취약지역을 군부대장의 요청에 의거 심의하고,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시행한다.

②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선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마. 거동 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정 1998. 04. 01 조례 제1566호
개정 1998. 10. 10 조례 제1603호
개정 2001. 07. 27 조례 제184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부천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①협의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통제구역 설정
5.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2.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20인이상 3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부천시의회 의장
2. 부천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3. 부천지역 국군기무부대의장 또는 그 부대원<개정 2001.07.27>
4. 국가정보원 부천지역 관계자
5.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6. 부천남부, 중부경찰서장
7. 부천교육장
8.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④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협의회에는 작전,예비군,총무,민방위담당 간사를 둔다.

제4조(실무위원회)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천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②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역협의회 담당간사와 의장이 위원중 지정한 자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협의회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조정·통제한다.

③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④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국장, 실·과장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의료·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7조(통제구역의 설정기준 및 대피명령) 통제구역의 설정기준 및 대피명령 발령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8.04.01 조례 제1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7.27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